

의안번호	제460호
의결 연월일	2013년 월 일 (제318회)

**충청북도지사·충청북도교육감 및
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**

발의자	김재중 의원 외 6명
발의연월일	2013년 3월 14일

충청북도지사·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

의안 번호	460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3년 3월 14일

발 의 자 : 김재중, 정 현, 황규철,
권기수, 김도경, 유완백,
이수완 의원

□ 주 문

- 도정 및 지방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를 대상으로 한 질문과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 등에 대한 본회의 심의·의결을 위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·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붙임과 같이 요구합니다.

□ 제안이유

- 제3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
 - 도정 및 지방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(대집행부질문)에 대한 답변을 듣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지방 교육행정에 반영하고
 -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 등에 대한 본회의 심의·의결을 위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
- 「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」 제73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·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임.

□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
- 「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」 제73조

붙임 : 충청북도지사·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

충청북도지사·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

○ 제3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

- 도정 및 지방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(대집행부질문)에 대한 답변을 듣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지방 교육행정에 반영하고
-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 등에 대한 본회의 심의·의결을 위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

○ 「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」 제73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·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.

◇ 출석일 : 제3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개의일 <2일간>

- '13.04.15.(제1차 본회의), '13.04.24.(제2차 본회의)

※ 의사일정 변경으로 본회의 개의일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날을 출석일로 함.

◇ 출석장소 : 충청북도의회 본회의장

◇ 출석이유

- 도정 및 지방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
- 집행부제출 안건 등의 심의·의결을 위한 질의에 대한 답변

◇ 출석대상

- 충청북도지사, 충청북도교육감
- 「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의회에 출석·답변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도 및 교육청의 실·국·원·단·본부장(공보관·여성정책관 포함) 이상 간부공무원과 대집행부질문 답변대상자